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-8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12월 23일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김영기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 조문내용상 “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”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(목적) 조문내용중 “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” 조문에 “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”의 조문을 추가해야 하나 조문이 너무 나열식이 됨에 따라 포괄적 의미로 “중·고등학교”를 삭제함과, 동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조문내용중 반복되는 문안을 하나의 호로 통합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“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”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(목적) 조문내용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삭제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조문내용과 일치시켰으며, 동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를 합하여 하나의 호로 수정함.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를 하나의 호로 통합 수정하고, 동 조례 제1조중 “중·고등학생”을 삭제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지급하는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 1.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 2.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 3.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	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 1. 국민기초수급권자·영세농어민·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 2. 국민기초수급권자·영세농어민·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. 다만, 방송통신 대학은 제외한다. 3. (삭 제)	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 1. 국민기초수급권자·영세농어민·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. 다만,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. 2. (삭 제) 3. (개정안과 같음)